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1123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제헌, 임경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9. 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721,8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21,8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04. 3. 23.경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91606호로 대여금 2,073,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1. “C는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073,253원 및 이에 대한 200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은행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9. 3. 25.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C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현재 C에 대하여 2021. 4. 6.을 기준으로 15,512,784원의 대여금채권액을 가지고 있다.

다. 한편, C의 모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2. 8.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F, C가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외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별달리 없었다.

라. C는 2019. 1. 7. 피고 및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8. 12.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는 2019. 1.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가평군 및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주택 중 C의 상속분에 해당 하는 부분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주택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그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바, 피고가 실제 소유자로서 배우자인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명의신탁재산의 반환 수단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 회피의 목적 없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유지에 관한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C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전인 2004. 3. 23.경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인정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엇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 용도인 대출금에 관하여 그 원리금 상환액의 대부분이 피고가 망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납입되는 등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 중 일부의 출처가 피고라고 볼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2007. 3.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주택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② 망인이 남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는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대여, 증여, 채무변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특유재산 추정을 반복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주택의 시공·분양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그 임차인 명의 역시 피고로 되어 있다. ④ 위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로 피고가 아닌 ‘망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69,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⑤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매수대금은 60,000,000원이었는데, 그중 5,000,000원은 망인 명의로 체결된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나머지 55,000,000원은 망인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⑥ 망인이 사망한 2018. 12.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 55,000,000원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4,757,510원(2018. 12. 31. 이후 상환금액 제외)만 상환되어 30,242,490원(= 55,000,000원 - 24,757,510원)이 남아 있었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C의 당시 재정상태 등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와 피고의 관계 및 C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71,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9. 1. 17.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부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 2019. 1. 18.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위 면책적 채무인수 이후 2019. 1. 29.부터 2021. 10. 29.까지 이 사건 대출금 원금 합계 9,254,76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액수가 확정적으로 감소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속채무자 내지 채무인수인으로서 변제한 부분에 관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인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공동담보가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67,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제4회 변론조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체결일인 2019. 1. 7.을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은 29,973,63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이 감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10,721,820원(= (67,500,000원 - 29,973,630원) × 2/7)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인 2021. 4. 6.을 기준으로 15,512,78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의 가액배상 범위

위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피고의 가액배상 범위는 위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인 10,721,820원이다.

라. 소결론

C와 피고 사이에 2019. 1. 7.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주택 중 2/7 지분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0,72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영

별지

1) 2019. 1. 7. 기준 대출 잔액 29,973,630원에 2018. 12. 31.자 상환금액 268,860원을 더한 금액과도 일치한다.